

개정 공직선거법 주요내용

① 의원정수 및 의석배분

1. 의원정수 : 300명(지역구국회의원 253명 + 비례대표국회의원 47명)

2. 의석배분 : 정당별 비례대표 할당의석수 산정(준연동 방식)

- (연동배분의석수 산정)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를 뺀 후, 그 수의 50%에 이를 때까지 해당 정당에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을 먼저 배분

※ 의석할당정당은 현행과 같음(지역구 5석 또는 비례대표 전국유효득표 3%)

- (잔여배분의석수 산정) 잔여의석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를 배분
- (조정 의석수 산정) 연동배분의석수가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를 초과할 경우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비율대로 배분(초과의석 방지 방안)

< 부 칙(§4) >

- 제21대 국선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배분
 - 30석에 대하여 준연동 방식으로 배분
 - 17석에 대하여 기존 의석배분방식(병립형) 배분

② 비례대표 추천절차 법정화

- (추천절차 제출 및 공표) 비례대표 추천절차를 당헌·당규 및 그 밖의 내부규약 등으로 정하고, 선거일 전 1년*까지 선관위 제출 및 공표

* 제21대 국선에서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까지 제출(부칙 §3)

- (선거인단 투표) 민주적 심사절차와 당원·대의원 등을 포함한 선거인단의 투표 절차를 거쳐 후보자 추천
- (회의록 등 제출)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과정을 담은 회의록 등 관련 서류*를 후보자등록시에 선관위 제출
 - * 관련서류 미제출 시 수리불가 사유
- (등록무효) 선관위는 후보자 추천 서류를 검토하여 비례대표 추천절차를 정한 내부규약 등을 위반한 경우 해당 정당의 모든 후보자등록을 무효 처리

③ 선거권 연령 18세로 하향(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 *2002. 4. 16. 이전 출생자)

붙임 1. 준연동형 선거제 의석배분방식 1부.

2. 제21대 국선 비례대표 의석배분방식(부칙) 1부. 끝.

< 개 요 >

- (1단계) 전국단위 준연동(연동비율 50%) 방식으로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 산정
- (2-1단계)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 < 비례대표 의석정수(47석)
 - ☞ 잔여의석에 대해 기존 의석배분방식(병립형) 적용 배분
- (2-2단계)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 > 비례대표 의석정수(47석)
 - ☞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비율대로 배분

① 의석할당정당 배분 총의석 산정

- (연동배분의석수 산정)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 수를 뺀 후, 그 수의 50%에 이를 때까지 해당 정당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석을 먼저 배분

$$\text{연동배분의석수} = \frac{\left[\left(\begin{array}{l} \text{국회의원} \\ \text{정수} \end{array} - \begin{array}{l} \text{의석할당정당이 추천하지} \\ \text{않은 지역구국회의원} \\ \text{당선인수} \end{array} \right) \times \begin{array}{l} \text{해당 정당의} \\ \text{비례대표국회의원} \\ \text{선거 득표비율} \end{array} - \begin{array}{l} \text{해당 정당의} \\ \text{지역구국회} \\ \text{의원당선인수} \end{array} \right]}{2}$$

사 례

구분	A당	B당	C당	D당	무소속 등	합계
지역구당선인수	100석	80석	40석	30석	3석	253석
비례득표비율	40%	30%	10%	20%	-	100%
연동배분의석수	9석	5석	0석	15석	-	29석

※ A당 연동의석수 = $\frac{[(\text{국회의원정수 } 300 - \text{무소속 등 } 3) \times \text{A당 비례득표비율 } 40\% - \text{A당 지역구 } 100]}{2}$
 (결과값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, 1보다 작으면 0)

②-1.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 < 비례대표 의석정수(47석)

- (잔여배분의석수 산정) 잔여의석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을 배분

$$\text{잔여배분의석수} = \left(\begin{array}{l} \text{비례대표국회의원정수} \\ \text{정수} \end{array} - \begin{array}{l} \text{각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} \end{array} \right) \times \begin{array}{l} \text{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} \\ \text{득표비율} \end{array}$$

사 례

구분	A당	B당	C당	D당	무소속 등	합계
비례득표비율	40%	30%	10%	20%	-	100%
연동배분의석수	9석	5석	0석	15석	-	29석
잔여배분의석수	7석	5석	2석	4석	-	18석

※ A당 잔여의석수 = $[\text{비례정수 } 47 - 29(\text{A연동 } 9 + \text{B연동 } 5 + \text{C연동 } 0 + \text{D연동 } 15)] \times \text{A당 비례득표비율 } 40\%$
 (결과값 정수를 먼저 배정하고, 나머지는 소수점이하 수가 큰 순으로 배분)

②-2.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 > 비례대표 의석정수(47석)

- (조정 의석수 산정) 연동배분의석수가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를 초과할 경우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비율대로 배분(초과의석 방지 방안)

$$\text{조정 의석수} = \frac{\text{비례대표국회의원정수} \times \text{연동배분의석수}}{\text{각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}}$$

사 례						
구분	A당	B당	C당	D당	무소속 등	합계
연동배분의석수	22석	18석	7석	13석	-	60석
조정 의석수	17석	14석	6석	10석		47석

※ A당 조정 의석수 = $\frac{\text{비례정수}47 \times \text{A당 연동}22}{\text{각 정당 연동 합계}60}$ (결과값 정수를 먼저 배정하고, 나머지는 소수점이하 수가 큰 순으로 배분)

< 개 요 >

- (1단계) 30석에 대해 전국단위 준연동(연동비율 50%) 방식으로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 산정
- (2-1단계)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 < 30석
 - ☞ 잔여의석에 대해 기존 의석배분방식(병립형) 적용 배분
- (2-2단계)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 > 30석
 - ☞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비율대로 배분
- (3단계) 17석에 대해 기존 의석배분방식(병립형) 적용 배분

1 30석에 대해 의석할당정당 배분 총의석 산정

- (연동배분의석수 산정)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 수를 뺀 후, 그 수의 50%에 이를 때까지 해당 정당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먼저 배분

$$\text{연동배분의석수} = \frac{\left[\left(\begin{array}{l} \text{국회의원} \\ \text{정수} \end{array} - \begin{array}{l} \text{의석할당정당이 추천하지} \\ \text{않은 지역구국회의원} \\ \text{당선인수} \end{array} \right) \times \begin{array}{l} \text{해당 정당의} \\ \text{비례대표국회의원} \\ \text{선거 득표비율} \end{array} - \begin{array}{l} \text{해당 정당의} \\ \text{지역구국회의원} \\ \text{당선인수} \end{array} \right]}{2}$$

사 례						
구분	A당	B당	C당	D당	무소속 등	합계
지역구당선인수	100석	80석	40석	30석	3석	253석
비례득표비율	40%	30%	10%	20%	-	100%
연동배분의석수	9석	5석	0석	15석	-	29석

※ A당 연동의석수 = $\frac{[(\text{국회의원정수} 300 - \text{무소속 등} 3) \times \text{A당 비례득표비율} 40\% - \text{A당 지역구} 100]}{2}$
 (결과값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, 1보다 작으면 0)

2-1.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 < 30석

- (잔여배분의석수 산정) 잔여의석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을 배분

$$\text{잔여배분의석수} = \left(30 - \text{각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} \right) \times \text{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득표비율}$$

사 례						
구분	A당	B당	C당	D당	무소속 등	합계
비례득표비율	40%	30%	10%	20%	-	100%
연동배분의석수	9석	5석	0석	15석	-	29석
잔여배분의석수	1석	0석	0석	0석	-	1석

※ A당 잔여의석수 = [비례정수30 - 29(A연동9 + B연동5 + C연동0 + D연동15)] × A당 비례득표비율40%
(결과값 정수를 먼저 배정하고, 나머지는 소수점이하 수가 큰 순으로 배분)

②-2.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 > 30석

- (조정 의석수 산정) 연동배분의석수가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를 초과할 경우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비율대로 배분(초과의석 방지 방안)

$$\text{조정 의석수} = \frac{30 \times \text{연동배분의석수}}{\text{각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}}$$

사 례						
구분	A당	B당	C당	D당	무소속 등	합계
연동배분의석수	13석	12석	8석	10석	-	43석
조정 의석수	9석	8석	6석	7석	-	30석

※ A당 조정의석수 = $\frac{30 \times \text{A당 연동} 13}{\text{각 정당 연동 합계} 43}$ (결과값 정수를 먼저 배정하고, 나머지는 소수점이하 수가 큰 순으로 배분)

③ 17석에 대해 병립형 의석 배분

- 17석에 대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을 배분

$$\text{배분의석} = 17 \times \text{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}$$

사 례						
구분	A당	B당	C당	D당	무소속 등	합계
비례득표비율	40%	30%	10%	20%	-	100%
배분의석수	7석	5석	2석	3석	-	17석

※ A당 배분의석수 = 17 × A당 비례득표비율40% (결과값 정수를 먼저 배정하고, 나머지는 소수점이하 수가 큰 순으로 배분)